

2021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부산거주 미취업 청년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2021년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카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 신청자격 참고
 - ① 공고일(2021.2.15.)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이하 부산 거주 청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1986.2.16.~2003.2.15.까지 출생자
 - ② 공고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자
 (단,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 ③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상용)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지원 제외
 - ④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 ⑤ 기타 : 청년 디딤돌카드 1~2차 사업, 2019년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미참여자, 2020년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사업 미참여자

○ 모집인원 : 1,050명

○ 접수기간 : 2021. 2. 22.(월) ~ 2021. 3. 10.(수) 18:00까지(공고: 2021.2.15.)

○ 지원내용 :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 6개월) *생애 1회 지원
 - 직접비 : 시험응시료,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서적 구입비, 면접 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 간접비 :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등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http://www.busanjob.net>) 온라인 접수

○ 지원기간 : 포인트 지급 시부터 6개월간

○ 지급방법 : 전용 체크카드(클린카드)

- 협약은행 통장 개설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받으면, 포인트가 지급되어 취·창업 활동분야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전 지원방식(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 불가)
- 주점, 노래방, 카지노, 안마사술소, 귀금속점 등 취·창업 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결제 불가
 (* 결제 불가업종 상세내역은 대상자 사전 교육 시 배부 예정)

- 선정방법 : 정량·정성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 4. 신청기준 참고
 - 정량평가(100점) : 가구소득(70점), 미취업 기간(30점)
 - * 동점자는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 등 심사
-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 미제출 시 자격상실 처리 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 중단
 - 매월 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활동 증명서 제출
 -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 중단

2. 신청 자격(※ 신청 시 신청자 오기 입력에 따른 피해는 구제가 불가함)

- 연 령 : 공고 게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 1986.2.16.~2003.2.15. 출생자
 -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복무 기간 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예시) 24개월 군 복무자 :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2021.2.15.)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
- 학 력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 자
 - * 단,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는 참여 가능
 - * 휴학 중, 졸업예정, 졸업유예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득수준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 소득 범위 :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 최근 3개월('20년 11월 ~ '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과액
 - *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소득수준은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①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기준

< '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8천원	3,088천원	3,984천원	4,876천원	5,757천원	6,629천원	7,497천원
기준중위소득 (120%)	2,193천원	3,706천원	4,781천원	5,852천원	6,909천원	7,954천원	8,997천원
기준중위소득 (150%)	2,742천원	4,632천원	5,976천원	7,314천원	8,636천원	9,943천원	11,246천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2020. 8. 7.)

②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 수 기준(붙임 3 참조)

(가구원수) 미혼 : 부, 모, 본인,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포함 가능 기혼 :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여부에 따라 부모 포함 가능 *형제·자매, 기혼자의 부모는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에 한해 포함 여부 결정
(소득범위)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21년 가구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20% 초과~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된 금액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보수월액 × 보험료율(3.335%, 2020년 기준)

○ 취업 여부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 가능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단, 휴업 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 휴학생 등 포함)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습중인 자 신청 가능

* 단,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는 참여 가능

○ 동시참여 제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구직촉진수당) 및 II 유형 참여자, '20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의료·교육) 및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정부 및 부산시 직접 일자리 사업(부산시 취업연수생 고용 사업 등) 참여자, 훈련장려금 참여자

○ 참여제한 기간 적용대상(사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 '20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상용) 및 사업자 등록된 자

○ 부산시 기존 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 디딤돌카드 수혜 경험자, 기초 자치단체의 청년 복지카드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3.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http://busanjob.net) 게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온라인신청서	- 신청자 오기 입력에 따른 피해는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기입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반드시 자필서명 필요)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처리)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인 2021년 2월 15일 이후 발급분(이전 발급분은 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세대주 관계 포함 - 최종 전입일이 확인되어야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인 2021년 2월 15일 이후 발급분(이전 발급분은 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원칙, 기혼일 경우 본인 기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준은 [붙임 3] 참고
활동계획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정성평가 심사 시 평가항목 - 선정 이후 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 및 보고서 제출 의무사항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 2020년 11월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 첨부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본인 및 가구원)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자격 확인서 첨부 필수 (형제자매 포함시 형제자매의 자격확인서도 제출)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확인서 첨부 필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 부모와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관련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전체가력포함)	- 본인의 최종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 표시되어야 함)
최종입학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본인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병역증명서	- 만 34세 초과한 병역의무 이행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선택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021. 3. 1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1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접속(www.busanjob.net)	
2	개인 회원 가입	
3	"2021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카드)" 선택 후 신청	
4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5	구비서류 첨부 제출(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 업로드)	

5. 선정 기준

① 정량평가

○ 가구소득 70점 ▷ 전체 10구간, 구간별 7점씩 차등 배점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과액 기준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 금액으로 심사

* 가구원 수 : 부.모.본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희망 시 형제·자매 포함 가능

(형제자매는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구원 포함여부를 결정,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로 기본산정)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중 120% 근접 순으로 순위 설정

○ 미취업기간 30점 ▷ 전체 6구간, 구간별 5점씩 차등 배점

- 공고일 현재(미취업)부터 졸업·중퇴일자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자간 기간을 미취업기간으로 선정

- 졸업·중퇴일자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모두 존재할 경우 최근일자로 미취업기간을 산정 (공고일 - 졸업·중퇴일자(고용보험 상실일자) = 미취업 기간)

* 동점자는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정

② 정성평가

- 심사항목 : 활동계획서의 노력도,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

* 활동계획이 부적정하거나 취업의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7.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4. 9.(금) 발표(예정)
- 방 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
- 예비교육 * 추후 별도 공지
 - 일시 : '21 4월 중 참여자 예비교육 예정
 - 방법 : 현장설명회 또는 온라인 교육(온라인 상 매뉴얼로 대체가능)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8. 기타(유의)사항

-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제출 절대 불가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제출서류 일체)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음
 - ※ 사업신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음
-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포함)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포함) 대상자는 아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할 수 있음

※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청년일자리팀(051-816-4608, 4602)

【붙임 1】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 등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 "M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이력 내역서	· 이력서 발급은 http://total.kcomwel.or.kr/ →개인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상용 선택)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졸업·제적 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해당 학교 민원실 등
병역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붙임 2】 타제도 중복 참여 가능여부

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가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2.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가
-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 (동시참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부산형 기초보장제 동시참여 불허
-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하며, 자활사업 참여시,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 (순차참여) 별도제한 없음

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취업성공 패키지

- (동시참여) 자기주도적 취·창업 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동시 참여 불가
- (순차참여) 별도제한 없음

5. 실업급여

-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가
- (순차참여) 별도제한 없음
-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먼저 수급할 필요

6. 정부지원 훈련 : 계좌 발급 가능, 훈련 장려금 수급 불가

- (동시참여) 훈련 장려금과 동시수급 불가
- (순차참여) 훈련계좌 중단 또는 종료 후 신청 시 재참여 제한기간 없이 참여가능
- * 지원금 종료 후 훈련계좌 참여는 별도 제한하지 않음

7. 직접일자리 사업(중앙·자치단체 불문)

- ↳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 (동시참여) 동시참여 불가
- (순차참여) 별도 제한 없음

【붙임 3】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① 미혼일 경우

- 부모·본인·형제·자매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 원칙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부·모 모두 생존이면 부 또는 모 기준 무관
 - ▲ 이외의 경우는 동거 중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출
 - 부·모가 이혼하고, 부와 거주 중이면,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구원은 '부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모가 이혼 후 부가 재혼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재혼한 상대방도 가구원으로 포함 → 가구원은 '부 + 재혼한 상대방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모)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필요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제출 후, 심사하여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확정된 부·모

-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결정
 -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형제·자매가 부·모·본인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 소득 확인 방법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

(계속)

② 기혼일 경우

- 본인·배우자·자녀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 원칙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이혼의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 이혼·사망 등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과 동일
 - (자녀) 신청자 본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소득 확인 방법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